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,826,758,741	153,463,940
일 반 회 계	4,165,065,400	124,740,500
특 별 회 계	661,693,341	28,723,440
기 타 특 별 회 계	424,114,821	12,723,440
농 어 촌 주 택 사 업	10,207,810	306,230
의 료 급 여 기 금	383,877,011	11,516,310
동 부 권 특 별 회 계	30,030,000	900,900
공 기 업 특 별 회 계	237,578,520	16,000,000
지 역 개 발 기 금	237,578,520	16,000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,412,71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